

전주지방법원 2023. 12. 20 선고 2021가합4948 판결 [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곤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효종

변론 종결2023. 11. 1.

판결 선고2023. 12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8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 및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2021. 4. 9.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, 원고는 같은 날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2021. 5. 10. 위 가계약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,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, 유한회사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원고는 같은 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.

2. 계약내용

제2조

- 매매대금 25억 원

-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2021. 4. 9.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돈으로 갈음함, 지급일 2021. 5. 10.

- 중도금 6억 원 중 3억 원은 2021. 12. 15.까지, 나머지 3억 원은 2022. 4. 20.까지

- 잔금 2021. 6. 15.부터 매월 2,000만 원을 지급 후 상계, 지급일 2022. 10. 30.

제6조 피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,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.

※ 특약사항

1. 매매대상 부동산은 소유자가 상이하나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및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이므로 매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기로 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.

(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. 단,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으로 그 대표권을 제한한다)

4. 피고는 계약금을 모두 받으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동의 및 협조를 한다.

5.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의 정기금(2,000만 원)을 3회 이상 연체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고 원고가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21. 7.경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상당한 3억 원 합계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.

한편, 위 기초사실과 갑 제4, 6호증, 을 제3호증, 제8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E 법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, ①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 지급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하여 특별히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는바, 피고는 2021. 6. 11.경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교부하였고 법무사가 2021. 6. 16.경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 바 있었으나, 원고가 2021. 6. 15.부터 매월 2,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회수한 점, ②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¹⁾으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경영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정기금 1회기일(2021. 6. 15.) 이후부터 원고가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권능이 있는 점, ③ 원고는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내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(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카단10855)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9,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(22억 원) 중 위 청구금액을 제외한 부분, 특히 2021. 6. 15.부터 매월 2,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일부 잔금을 지급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할 의무에 관하여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고춘순

판사성재민

판사신서영

별지

1)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도 나타난다.